#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58

발의연월일: 2025. 3. 5.

발 의 자: 박성훈·김성원·이헌승

이인선 • 고동진 • 최은석

조배숙 • 한지아 • 박충권

김기웅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단순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을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품질인증제도의 취지가 술의 품질향상 및 고품질 술 생산 장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줌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3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 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제25조제3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25조제6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5조의2(시정명령)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제25조제3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36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b>.</b>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품	3. 제25조제3호를 위반한 자로		
<u> 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u>	서 제25조의2에 따른 시정명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		
<u>한 자</u>	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품	2. 제25조제6호를 위반한 자로		
<u> </u>	서 제25조의2에 따른 시정명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		

## 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